

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] <개정 2026. 2. 5.>

생활용품의 지급기준(제8조제2항 관련)

1. 신입수용자에 대한 지급 기준

구분 품목	1명당 지급 기준	1명당 지급 횟수
치약	50그램	1
칫솔	1개(일반용)	1
세면비누	50그램	1
세탁비누	300그램	공용
수건	1매(75그램)	1
화장지	3개(개당 50미터)	1
생리대	18개(날개)	1
주방세제	300밀리리터	공용
수세미	1매	공용

2. 신입 후 정기 지급 기준

구분 품목	1명당 지급 기준	사용 기간(월)	연간 지급 횟수
치약	150그램	1	12
칫솔	1개(일반용)	2	6
세면비누	140그램	1	12
세탁비누	300그램	2	6
수건	1매(75그램)	2	6
화장지	4개(개당 50미터)	1	12
생리대	18개(날개)	1	12
주방세제	300밀리리터	12	1
수세미	1매	12	1

비고: 세탁비누, 주방세제, 수세미 등 공용 품목은 잔여량에 따라 지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.